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44호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57호(2025.9.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등은 별표와 같다.

2. 〈삭제 99.8.5〉

3.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경우 제조사업자는 매월 25일까지,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반기초 25일까지, 그 외 사업자는 분기말 25일까지 거래용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전월의 판매물량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

   가.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나.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검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

   가.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소정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

   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5. 특정가스사용시설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수수료는 증가되는 월사용예정량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시설철거 후 설치되는 경우에는 설치되는 월사용예정량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

하고, 그 밖에 월사용예정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완성검사수수료중 최저수수료를 납부한다.

6. 〈삭제 99.8.5〉

7.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기준에 따른다.

8.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가. 저장(처리)능력은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단위는 톤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압축가스는 용적(단위는 온도 0℃, 게이지 압력 0Pa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m3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나. 변경 완성검사 수수료는 다음기준에 따른다.

(1)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저장(처리)능력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다.

(2)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능력증가·위치변경 또는 교체 설치되는 경우에는 능력증가·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되는 설비능력에 해당하는 당해시설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저장탱크에 부속된 처리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저장능력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3) (1) 내지 (2)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수수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납부한다.

다.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수수료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납부한다. 다만, 검사 신청자가 2회를 초과하여 중간검사를 희망할 경우 초과 1회당 중간검사 수수료의 20%를 추가 납부한다.

9. (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16호, 2015. 1. 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2016- 9호, 2016. 1. 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2017-124호, 2017. 9. 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2018-226호, 2018. 12. 13.>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94호, 2019. 6. 1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2023-127호, 2023. 6. 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 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2025-157호, 2025. 9. 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 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2026-144호, 2026. 11. 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 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표]

1.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 및 안전관리수준평가 수수료

대상			금액
제조소		가스도매사업자 시설 (합성천연가스 제조시설)	103만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54만5천원
공급소			24만5천원
정압(밸브)기지			19만7천원
정압기			8만8천원
배관	연장이 2㎞미만		5만6천원
	연장이 2㎞이상 5㎞미만		11만5천원
	연장이 5㎞이상 10㎞미만		20만3천원
	연장이 10㎞이상		20만3천원에 10㎞를 초과한 매 1㎞마다 1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
안전관리수준평가	시설	배관길이 1km당 40,000원으로 하며, 1km미만인 경우는 1km로 계산한다.	
	시스템	배관 총연장이 300km 미만	437만8천원
		배관 총연장이 300km 이상 500km 미만	656만8천원
		배관 총연장이 1000km 미만	874만7천원
		배관 총연장이 1,000km 이상 2,000km 미만	1,094만6천원
		배관 총연장이 2,000km 이상	1,313만5천원
		배관 총연장이 3,000km 이상	1,532만5천원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자동차용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3만2천원	2만8천원
그 밖의 시설	월사용예정량이 1천㎥이하	6만6천700원	3만2천원
	월사용예정량이 1천㎥초과 월사용예정량이 4천㎥이하	6만6천700원	4만8천500원
	월사용예정량이 4천㎥초과	6만6천700원에 4천㎥를 초과한 500㎥마다 9천3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04만7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4만8천500원에 4천㎥를 초과한 500㎥마다 9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8만8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비고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단,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정기검사 수수료를 제외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 후 같은 해에 정기검사를 받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수수료에는 변경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다.
3.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연소기가 설치된 실이 2개소이하인 경우의 정기검사수수료는 최고금액 38만8천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가스사용시설에 금속 이중관형 연돌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완성검사 수수료 외에 104,000원을 가산한다.

3.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구 분	금 액	
	신 규	변 경
가스도매사업자 시설 (합성천연가스 제조시설)	48만2천원	37만1천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34만6천원	26만7천원
도시가스충전시설	29만1천원	22만5천원

4. 도시가스충전시설 중간.완성.정기검사 수수료

저장(처리)능력		금 액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액화가스의충전시설	5톤이하	10만6천원	17만4천원	13만9천원
	5톤초과 10톤이하	14만2천원	23만5천원	16만7천원
	10톤초과 20톤이하	16만4천원	29만5천원	19만7천원
	20톤초과 50톤이하	23만원	43만5천원	28만1천원
	50톤초과 100톤이하	32만원	59만9천원	37만5천원
	100톤초과 500톤이하	54만6천원	101만원	67만6천원
	500톤초과 1천톤이하	76만8천원	144만3천원	91만3천원
	1천톤초과	76만8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43만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144만3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6만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413만3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91만3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4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14만8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저장(처리)능력		금 액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압축가스의충전시설	1천㎥이하	12만3천원	20만4천원	15만1천원
	1천㎥초과 2천㎥이하	19만5천원	35만7천원	22만9천원
	2천㎥초과 3천㎥이하	22만3천원	44만8천원	27만9천원
	3천㎥초과 5천㎥이하	27만5천원	52만7천원	33만9천원
	5천㎥초과 1만㎥이하	45만5천원	89만2천원	64만9천원
	1만㎥초과 10만㎥이하	73만9천원	146만1천원	100만7천원
	10만㎥초과 20만㎥이하	101만5천원	194만7천원	168만6천원
	20만㎥초과 50만㎥이하	127만6천원	248만5천원	216만1천원
	50만㎥초과 100만㎥이하	172만3천원	307만4천원	261만3천원
	100만㎥초과	172만3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8만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43만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307만4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413만3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261만3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3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75만2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및 정밀안전진단.배관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이행결과 확인.안전성평가 수수료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호 나목에 의한 대상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법 제17조의4 제5항에 따른 배관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이행결과 확인 수수료는 259만원/km,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호 다목에 의한 대상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는 207만원/km(단, 매설배관피복손상탐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337만원/km을 가산한다.)으로 하며,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로 계산한다.

가. 대가산출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를 적용한다.
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30%를 적용한다.
4) 직접경비는 주재비, 출장비 등 업무비용을 적용한다.

나. 수수료는 가목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합한 1일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시공감리 수수료 산정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자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등급을 적용한다.

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에 시공감리・정밀안전진단 및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이행결과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소정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을 적용한다.

6. 가스안전영향평가 수수료

대 상	금 액	대 상	금 액
전기철도건설공사	230만2천원	지하차도건설공사	135만7천원
지하보도건설공사	95만3천원	지하상가건설공사	165만1천원

7.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수수료는 국내 공급 또는 소비물량을 기준으로 0.041원/m^3 (0 ℃, 101.3 kPa)으로 한다.

8. 교 육 비

대 상			금 액
교육과정별	교 육 대 상 자		
가. 전문교육	(1)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신규	19만5천900원
		보수	3만7천100원
	(2)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안전점검원	신규	13만300원
		보수	3만7천100원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안전조치 대행업소의 기술인력 중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신규	19만5천900원
		보수	3만7천100원
	(4)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신규	6만1천400원
		보수	2만8천600원
	(5) 가스시설 시공업 제1·2종의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신규	19만5천900원
		보수	3만7천100원
	(6)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의 온수보일러시공자 및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신규	19만2천700원
		보수	2만8천600원
나. 특별교육	(1) 보수·유지관리원		4만9천800원
	(2) 사용시설점검원		2만4천400원
	(3) 도시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		2만2천200원
	(4) 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2만4천400원
	(5)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2만4천400원
다. 양성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한다.		

비 고

1. 가목의 교육대상 중 “신규”는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에 받는 교육과정이며, “보수”는 신규과정 교육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받는 교육과정을 말한다.